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 16.] [조례 제8023호, 2024. 5. 16., 일부개정]



경기도(세정과)

제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개정 2017.5.4.>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부칙 <2016.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공장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1급 관광호텔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추징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4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부칙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 평택이주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개정 2019.10.01.>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92조의2에 따른 납부를 신청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부칙 <2019.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제2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본다.

부칙 (경기도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6325호, 201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가 부과 또는 감면한 도세 또는 경기도에 감면 신청·자료제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0.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3,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1일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원대상 국내 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